

Deloitte.

세무관세뉴스

2023년 7월



주목할 만한 사항:

법인소득세 ("CIT")

- 호치민시 ("HCMC") 의 CIT 인센티브에 대한 특정 메커니즘과 정책을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국회의 제98/2023/QH15호 결의서
- 이연판매 이자는 예금또는 대출 이자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음

간접세 ("VAT")

- 국내 제조·조립 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납부기한 연장에 관한 시행령
- 보상받을 손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VAT")

개인소득세 ("PIT")

- 세금을 직접 신고하는 지점은 다른 지역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PIT를 할당할 필요가 없음

출입국

- 정부는 최근에 베트남에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E-visa의 체류 기간 및 비자면제와 관련 신규규정을 통과하였음

외국인계약자세 ("FCWT")

- 베트남에서 일하는 직원 파견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FCWT

무역 및 관세

- 관세혜택 대상인 수입물품 확인절차 개정
- 202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업과 개인을 지원하기 위해 36가지 유형의 수수료 및 요금 감면에 대한 규정
- 새로운 관세표에 대한 2023년 5월 31일 제26/2023/ND-CP호 시행령 및 제15/2023/QĐ-TTg호 결정의 이행에 대한 지침
- 2023년 7월 1일부터 2% VAT 감면 대상 수입품에 대한 관세신고 안내
- 수출생산업체는 일부의 가공공정을 다른 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수입 원자재에 대한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없음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법인세 (CIT) 결의서

호치민시 (“HCMC”) 의 CIT 인센티브에 대한 특정 메커니즘과 정책을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국회의 제 98/2023/QH15 호 결의서

2023년 6월 24일, 국회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 호치민시의 CIT 인센티브에 대한 특정 메커니즘과 정책 시범 적용을 위한 제98/2023/QH15호 결의서를 발표하였다.

1. 전략적 투자자는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 손금산입 가능한 연구개발비용(R&D)은 CIT목적으로 150%의 실비로 공제 받을 수 있다;
- 규정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호치민시에서 진행되는 수출입 물품에 대하여 우선적인 관세 및 세무 절차제도를 적용 받을 수 있다.

2. HCMC의 우선 분야에서 혁신 및 스타트업 활동은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 이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CIT는 납부 해야 할 CIT가 발생한 연도로부터 5년간 면제;
- HCMC에 위치한 혁신 스타트업에 자본, 자본 기여권을 양도로 인한 소득을 발생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PIT 및 CIT 면제;
- HCMC에서 혁신 스타트업, 과학기술 조직, 혁신센터 및 혁신기업을 지원하는 중간 조직에서 일하는 전문가, 과학자, 특별한 재능을 가진 개인의 급여 및 임금소득에 대한 PIT는 5년간 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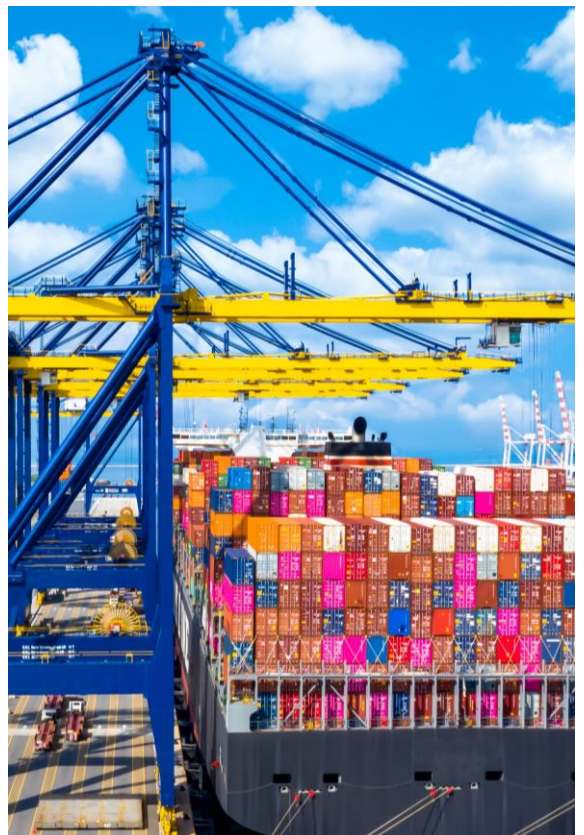
(국회의 2023년 6월 24일 제 98/2023/QH15 호 결의서)

지침 문서

이연판매 이자는 예금또는 대출 이자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음

기업이 특수관계자와 거래에서 이연판매 이자소득을 얻은 경우 이연판매 이자는 제 132/2020/ND-CP호 시행령의 제 16조 제3항에 의한 규정에 따라 예금 또는 대출 이자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세무총국의 2023년 6월 19일 제 42369/CTHN-TTHT 호 이)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https://www.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간접세 (VAT) 신규 규정

지침 문서

국내 제조·조립 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납부기한 연장에 관한 시행령

2023년 6월 21일, 정부는 국내 제조·조립 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SCT")의 납부기한 연장에 관한 제36/2023호/ND-CP호 시행령을 발표하였다.

이연장은 2023년 6월, 7월, 8월 및 9월의 과세기간에 적용되며 SCT의 납부기한이 2023년 11월 20일까지로 연장된다.

연장 대상 납세자는 전체 연장 기간의 SCT 신고서와 연장신청서를 관리하는 세무국에 제출한다. 연장 신청서의 제출 기한이 2023년 11월 20일이다.

(정부의 2023년 6월 21일 제 36/2023/ND-CP 호 시행령)

보상받을 손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VAT")

회사는 VAT 부과되는 손상품이 발생하여 보험대리점한테서 보상금을 받은 경우

- 손상품의 매입 VAT가 보상금액에 **제외되는** 경우 회사는 손상품의 매입 VAT를 신고하고 규정조건을 충족하면 VAT 목적으로 공제할 수 있다. 회사가 규정에 따라 영수증 바꾸처를 발행한다:
- 손상품의 매입 VAT가 보상금액에 **포함되는** 경우 회사는 손상품의 매입 VAT를 신고하고 규정조건을 충족하면 VAT 목적으로 공제할 수 있다.

회사는 VAT 인보이스를 발행하고 (인보이스에 VAT 미포함 보상금액 및 VAT 금액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함), 보상된 VAT 금액에 해당하는 매출 VAT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Long An 세무국의 2023년 5월 23일 제 1736/CTLAN-TTHT 호 OL)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https://www.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개인소득세 (PIT) 지침 문서

세금을 직접 신고하는 지점은 다른 지역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PIT를 할당할 필요가 없음

직접 관리하는 세무국에 세금을 신고하는 회사의 지점은 다른 지역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임금, 급여를 지급하고 PIT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지점은 직원이 일하는 지역에 PIT를 할당 필요가 없다.

대신에 지점은 관리 세무국에 PIT를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한다.

(Hanoi 세무국의 2023년 6월 30일 제 45194/CTHN-TTHT 호 OL)



외국인계약자세 (FCWT) 지침 문서

베트남에서 일하는 직원 파견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FCWT

외국기업이 베트남기업과의 계약 또는 합의서에 따라 베트남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베트남에서 일하는 직원파견으로 인해 소득을 창출하는 경우 FCWT 부과된다.

(Hanoi 세무국의 2023년 7월 10일 제 49216호 OL)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출입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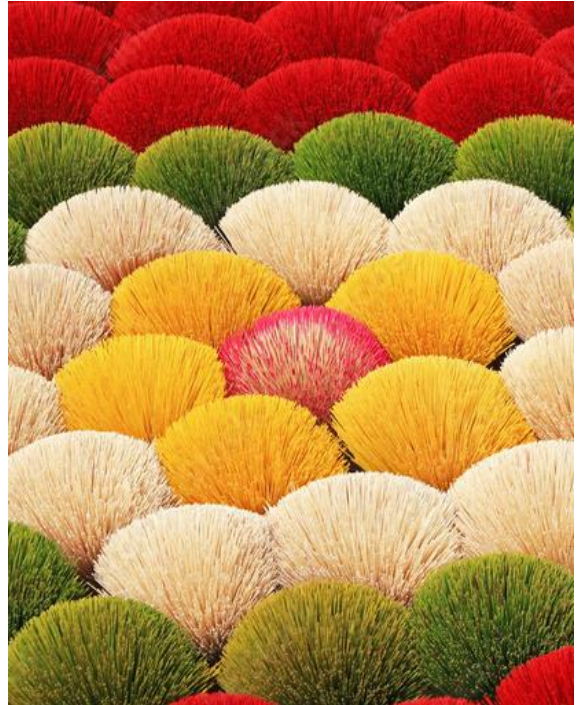
신규초안

정부는 최근에 베트남에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E-visa의 체류 기간 및 비자면제와 관련 신규규정을 통과하였음

변경 사항은 아래와 같다:

- E-Visa 는 구체적인 80개국에 적용되며 복수 입국 비자로 발급되고 최대 90일까지 (현재 30일) 체류가 가능하다.
- 영국, 북아일랜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한국, 일본, 러시아, 벨로루시의 시민에게 비자면제 적용하며 최대 45일 (현재 15일)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이 신규 변경 사항은 2023년 8월 15일부터 정부의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적용 될 예정이다.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무역 및 관세 신규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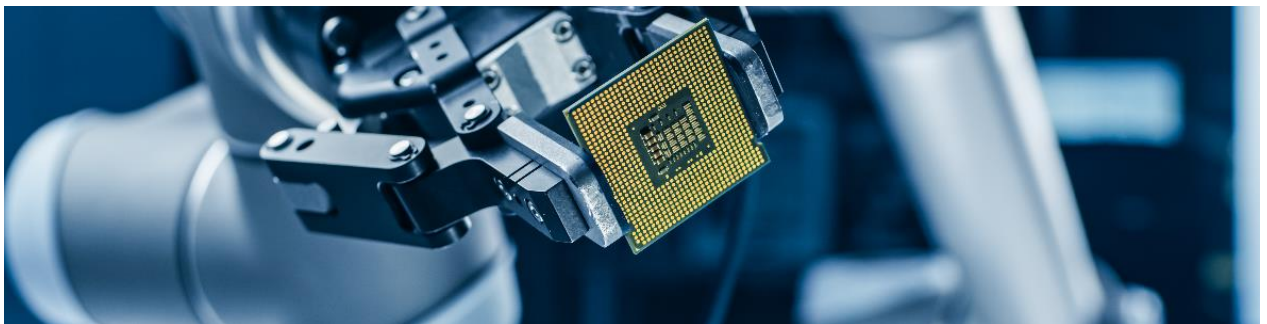
관세혜택 대상인 수입물품 확인절차 개정

이 결정에서 개정된 절차가 아래와 같다:

- HS 98.18그룹에 따라 기관차 및 철도 차량의 건설, 수리 및 유지보수를 위해 수입된 물품의 확인
- 제26/2023/ND-CP호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핵심기계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 유형 확인
- 연간 1,000만 개 이상의 벽돌 표준용량으로 가벼운 미연 건축 자재 생산 및 시멘트 골재 벽돌 생산에 사용되는 장비를 제조하는 프로젝트를 위해 수입된 공급 물품 및 장비 확인
- HS 98.23그룹에 따라 돈을 운반하기 위해 설계된 차량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 확인
- HS 98.34에 따라 정보 기술 상품의 생산 및 조립을 위한 원자재, 공급품, 부품 및 보조 부품인 수입 물품 목록 확인
- 샤시 차량으로 제작·조립된 전용차량에 대한 관세환급 평가
- 자동차 제조 및 조립에 대하여 세금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등록
- HS 98.49그룹에 대해 세율 0% 적용
- 자동차 지원 산업을 위한 세금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등록
- 자동차 지원 산업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따라 세율 0% 적용

본 결정은 2023년 7월 15일부터 유효된다.

(재무부의 2023년 6월 23일 제1338/QĐ-BTC호 결정)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무역 및 관세 신규 규정

202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업과 개인을 지원하기 위해 36가지 유형의 수수료 및 요금 감면에 대한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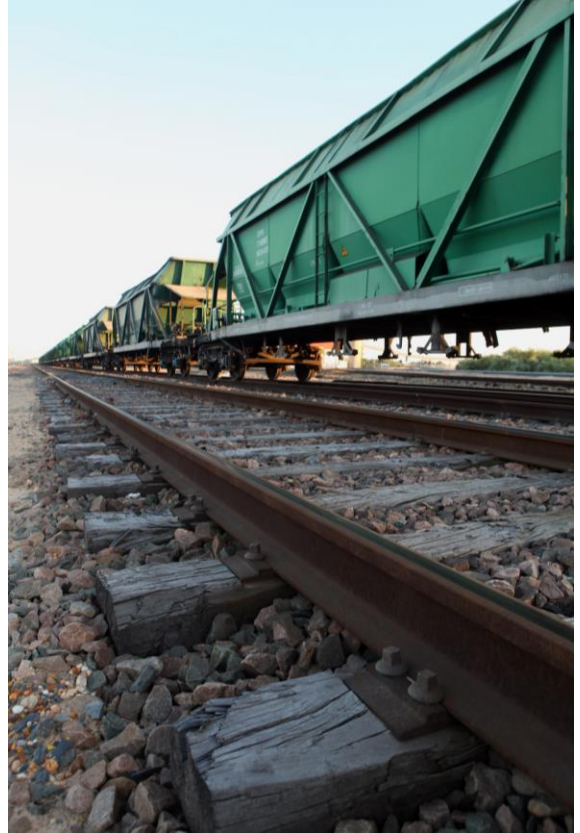
2023년 6월 29일에 재무부는 202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6가지 유형의 수수료 및 요금을 10%에서 50%까지 감면에 대한 제44/2023/TT-BTC호 시행규칙을 공표하였다. 구체적으로:

- 비사업 출판물의 수입 허가 수수료 및 사업 목적의 출판물 수입허가서 발급 수수료를 50% 감면
- 육상동물 및 동물 제품, 수입된 수산물, 재수출용 일시적 수입되고 국경 관문으로 옮긴 수산물 (보세창고 포함)에 대한 검역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50% 감면

수수료 징수 기관은 감면금액을 계산하여 다음기에 단체 및 개인에 의해 납부한 수수료과 상계할 책임이 있다.

본 시행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재무부의 2023년 6월 29일 제44/2023/TT-BTC호 시행 규칙)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무역 및 관세 지침 문서

새로운 관세표에 대한 2023년 5월 31일 제26/2023/ND-CP호 시행령 및 제15/2023/QD-TTg호 결정의 이행에 대한 지침

OL은 제26/2023/ND-CP호 시행령 및 제15/2023/QD-TTg호 결정에서 발행된 최혜국대우 관세 (MFN Tariff) 및 일반적인 관세의 새로운 변경 사항을 명확히 하며 2023년 7월 15일부터 유효된다.

• 특혜 수출 관세:

- 비료 제품에 대한 특혜 수출 관세율이 5% 지속적으로 적용된다 (0%세율이 적용되는 일부 HS 코드 제외).
- 목탄에 대한 특혜 수출관세율이 10%에서 5%로 감면된다.
- 가공되지 않은 아연 및 주석에 대한 특혜 수출관세율이 5%에서 10%로 인상된다.

• 특혜 수입 관세:

- 에탄올에 대한 특혜 수입 관세율이 15%에서 10%로 감면된다
- HS코드 24.0그룹의 모든 담배 제품은 특혜 수입 관세율 50%로 적용한다
- HS 2710.12그룹의 일부 제품에 대한 특혜 수입 관세율이 20%에서 10%로 감면된다.
- HS 코드 2710.19.90 및 2710.20.00의 상품에 대한 특혜 수입 관세율이 5%에서 0%로 감면된다
- 새로운 고무 타이어에 대한 특혜 수입 세율이 25%에서 20%로 감면된다.

- **일반특혜관세:** 다음 HS 코드에 대한 관세율이 0%로 감면된다: 2710.19.90, 2710.20.00, 2713.0.00, 2901.22.00

또한 제26/2023/ND-CP호 시행령에 한가지의 주목할 만한 변경사항은 자동차 부품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적용조건을 수정되었고 특히 차동자부품의 최소 녹다운 수준에 대한 조건이 제거되었다.

(관세총국의 2023년 6월 21일 제3173/TCHQ-TXNK호 OL)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https://www.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무역 및 관세 지침 문서

2023년 7월 1일부터 2% VAT 감면 대상 수입품에 대한 관세신고 안내

2% VAT 감면 대상인 수입품은 현재 VAT 10% 세율 적용하는 상품을 포함하며 제44/2023/ND-CP호 시행령의 제1조 1항에 의한 규정 및 부록 I, II, III에 세부적으로 명시된 VAT 감면 대상이 아닌 일부 상품을 제외한다.

- HS 코드 신고: 부록 I 열 (10), 부록 II의 부분 A 열 (10) 및 부분 B 열 (4) (VAT 감면 대상이 아닌 물품 목록)의 HS 코드는 **조회용으로만 사용된다**. 실제 수입품에 대한 HS 코드의 결정은 관세법의 물품 분류에 관한 규정 및 관세법 시행에 대한 지침문서를 준수한다. 특히 부록 I 열 (10), 부록 II의 부분 A 열 (10) 및 부분 B 열 (4)에 (*)표시가 있는 행의 경우 HS 코드를 실제 수입품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 VAT 감면 대상인 수입품의 경우, 기업은 세율8%를 신고하기 위해 VNACCS/VCIS 시스템에서 **VB205** 코드를 올바르게 선택해야 하며, 2023년7월1일 0시부터 등록된 관세신고서에 대해서만 세율 8%를 신고할 수 있다.

(관세총국의 2023년 6월 30일 제3431/TCHQ-TXNK호 OL)

수출생산업체는 일부의 가공공정을 다른 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수입 원자재에 대한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없음

관세총국에 따르면 업체가 생산용 원자재를 수입하고 수입관세를 납부한 경우 전체 생산공정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일부 또는 전부의 원자재를 다른 업체에 한 공정 또는 몇 가지의 공정을 외주가공 위탁한 후 가공품을 받고 나서 추가 공정을 수행한 후 수출할 경우 관세환급 규정을 충족하지 않아 외주가공을 받은 원자재에 대한 수입관세를 환급 받을 수 없다.

추가가공이나 수출을 위해 국내로 재수입되어, 수출가공업체에 아웃소싱된 재료의 경우, 수입관세가 부과되며, 수입관세 환급을 받을 수 없다.

(관세총국의 2023년 6월 26일 제3249/TCHQ-TXNK호 OL)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https://www.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Contact Us



Thomas McClelland
National Tax Leader
+84 28 7101 4333
tmcclelland@deloitte.com



Bui Ngoc Tuan
Tax Partner
+84 24 7105 0021
tbui@deloitte.com



Bui Tuan Minh
Tax Partner
+84 24 7105 0022
mbui@deloitte.com



Phan Vu Hoang
Tax Partner
+84 28 7101 4345
hoangphan@deloitte.com



Dinh Mai Hanh
Tax Partner
+84 24 7105 0050
handinh@deloitte.com



Vo Hiep Van An
Tax Partner
+84 28 7101 4444
avo@deloitte.com



Vu Thu Nga
Tax Partner
+84 24 7 105 0023
ngavu@deloitte.com



Tat Hong Quan
Tax Partner
+84 28 7101 4341
quantat@deloitte.com



Vu Thu Ha
Tax Partner
+84 24 710 50024
hatvu@deloitte.com



Dang Mai Kim Ngan
Tax Partner
+84 28 710 14351
ngandang@deloitte.com



Son Won Sik
KSG Director
+84 93 445 6850
wonsikson@deloitte.com



Bob Fletcher
Director, Trade and Customs
+84 28 7101 4398
fletcherbob@deloitte.com

Hanoi Office

15th Floor, Vinaconex Building,
34 Lang Ha Street, Dong Da District,
Hanoi, Vietnam
Tel: +84 24 7105 0000
Fax: +84 24 6288 5678

Ho Chi Minh City Office

18th Floor, Times Square Building,
57-69F Dong Khoi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 28 7101 4555
Fax: +84 28 3910 0750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About Deloitte Vietnam

In Vietnam, services are provided by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each of which may be referred to or known as Deloitte Vietnam.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